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설 명 서

2021. 12.



조 복희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조복희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9조의2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1조에는 기록표결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48조에는 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3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또한, 안 제82조의2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규칙 전반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복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228
----------	----------

발의일자: 2021. 11. 25.

발의자: 조복희,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4조, 제41조, 제70조 및 제82조)
- 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와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 4 신설)
- 다.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
- 라. 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 마.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82조의2)
- 사.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 1)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임기초”를 “임기 초”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선거후에”를 “선거 후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 내”를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인이상이면”을 “2인 이상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원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기 중”을 “회기 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개의시로”를 “개의시”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 구청장”을 “휴회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5분의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주민청구조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3) 제3항 전단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

정절차는 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찬성없이”를 “찬성 없이”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받은후”를 “받은 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제외”를 “의제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관심사안”을 “관심 사안”으로, “5분이 내”를 “5분 이내”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의 표결”을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기명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2조제2항 중 “의원중”을 “의원 중”으로 한다.

제44조 중 “결과를”을 “결과를 의장석에서”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표결 수

12. 기립 · 거수 ·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의원 성

명

제46조제1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서명날인한다”를 “서명 · 날인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재”를 “공개”로, “열람 · 복사등”을 “열람 · 복사 등”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를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포”를 “공표”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중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을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시간등에 제한없이”를 “시간 등에 제한 없이”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4조의 제목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를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열때”를 “열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7조제3항 본문 중 “되기전”을 “되기 전”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 · 봉인한다”를 “서명 · 날인한다”로 한다.

8. 표결 수

제60조 본문 중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로,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한다.

제62조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 중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개시전”을 “회의 개시 전”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특정분야”를 “특정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서명 날인한”을 “서명·날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토론없이”을 “토론 없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심의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경찰관서”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장안”을 “회의장 안”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료 · 문서등”을 “자료 · 문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문란시키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75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 외”를 “사람 외”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령등”을 “연령 등”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술에 취한 사람

제80조제4호 중 “끽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허가없는”을 “허가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소란등”을 “소란 등”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녹음 · 녹화등)”을 “(녹음 · 녹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의장안”을 “회의장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없이”를 “제한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자는”을 “하는 사람은”으로,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

다)"를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을 "소속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 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⑧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기간 중”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회”를 “공개회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의장과 부의장의 <u>선거후에</u> 개회식을 행한다.</p>	<p>----- <u>선거 후에</u> ----- -----.</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 략)</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원이 청가는 <u>5일이내</u>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p>	<p>② ----- <u>5일 이내</u>----- ----- ----- ---.</p>
<p>③ 의원의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u>기간내</u>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③ ----- ----- ----- ----- <u>기간 내</u>----- ----- -----.</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의원이 정당한 <u>이유없이</u>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u>해당의원</u>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⑤ ----- <u>이유 없이</u>----- ----- ----- <u>해당 의원</u>----- -----.</p>
<p>⑥ (생 략)</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p>	<p>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p>	<p>② ----- ----- ----- ----- ----- -----.</p>

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생 략)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서식에 따라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2조(회기) ① (생 략)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면 -----

③ (현행과 같음)

④ -----

끝난 후 -----

제8조의2(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

----- 3일 전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

----- 폐회 중 -----

제12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집회 후 -----

③ (생 략)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5조(휴회) ① (생 략)

② 휴회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

③ (현행과 같음)

④ -----
----- 회기 중-----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의시-----
----- 법 제72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제19조(의안의 제출 · 발의) ① -----

-----.
---- 5분의 1 이상-----

-----.
② -----
-- 10일 전-----

다. 이 기한 이후에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한다. 다만,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주민청구조례안) ① 구 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
-----.
-----.
-----.
-----.

제19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3(조례안 입법 예고) ① ·
② (생 략)
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규
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
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
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
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제19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
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
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3제2
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9조의5(조례안 입법 예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
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 . -----
----- .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소
관 상임위원회 -----

--. ----- 휴회 중 -----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
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
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
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
를 결정한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
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22조(수정동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 ④ (생 략)

제25조(안건심의) ① · ② (생 략)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
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

-----.
② -----

----- 소관 상임위원회
-----.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

제22조(수정동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찬성 없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안건심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건 이상-----
-----.

제25조의2(재회부) -----

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 략)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이 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 략)

----- 받은 후 -----

----- 의제 외 -----

-----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안-----
-----.

제33조의2(5분자유발언) ① -----

----- 범위 안-----

----- 관심 사안-----

--- 5분 이내-----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 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생 략)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2조(투표절차) ① (생 략)

② -- 2인 이상--

-----.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

----- 의장석에서 선포-----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
--- 본회의 의결-----
--- 기명투표-----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2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p>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u>의원</u>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u>결과를</u> 선포한다.</p> <p>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p> <p>1. ~ 10. (생략)</p> <p><u>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u></p> <p><u>12. 서면질문과 답변서</u></p> <p>13. (생략)</p> <p>② (생략)</p> <p>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u>2인이상</u>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u>서명날인한다</u>.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p>	<p>② ----- <u>의원</u> 중----- ----- ----- -----.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4조(표결결과 선포) ----- ----- <u>결과를</u> <u>의장석에서</u> ----- -----.</p> <p>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표결 수</u></p> <p><u>12. 기립 · 거수 ·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의원 성명</u></p> <p>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 <u>2인 이상</u>----- ----- <u>서명 · 날인한다</u>. -- ----- -----.</p> </p>
--	--

② (생 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포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 공개-----

----- 열람·복사 등-----

--- 아니 된다.

③ -----

--- 아니 된다.

④ -----

---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공표-----

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설>

제54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생 략)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1인 이상-----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

----- 시간 등에 제한 없이-----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청회) ① (생 략)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② (생 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7. (생 략)

8. 표결수

9. ~ 11. (생 략)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

제56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열 때--

----.

③ -----

-----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되기 전

--. -----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표결 수

9. ~ 11. (현행과 같음)

② -----

-----.

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 봉인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회의에 예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 아니 된다.

③ -----

-- 서명 · 날인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 없는 한 -----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

----- 소관 상임위원회-----

②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 끝난 후---

③ ----- 소관 상임위원회-----

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
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
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
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
항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
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
한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
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안은 의

--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1 이
상-----.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

--- 소관 상임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관 상임위원
회-----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
사) -----

-- 준용한다.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운

회운영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6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① 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질문시간 2일 전까지(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영위원회 -----
--- 1 이상 -----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 개시 전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① -----
----- 특정 분야 -----

② (현행과 같음)

(3) _____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지체 없이-----.

④ (현행과 같음)

⑤ -----

----- 아니 된다.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

지체 없이-----
---.

② -----
---- 10일 이내-----
----- 기간 내-----

-----.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사직) ① -----
----- 서명·날인
한 -----
---.

② ----- 토론 없이
----- 폐회 중-----
-----.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

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략)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
----- 기일
내-----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기일 내-----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사 대상인 의원----.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심사 대상인 의원-----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4조(의회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② ----- 심사 대상인 의원

심사 대상인 의원-----

③ 심사 대상인 의원-----

제73조(경호) ① -----

----- 관할 경찰관서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회의 질서유지) -----

----- 회의장 안

--- 아니 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자료·문서 등-----

및 녹음 · 녹화 ·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끼연

5. (생 략)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
장 안에는 의원 · 관계공무원 기
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
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② (생 략)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
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
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
다.

④ 방청인은 방청석에 주소, 성
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
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

4. ----- 흡연

5. (현행과 같음)

6. ----- 행사 등 -----
---- 어지럽히는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 사람과 -----

----- 사람 외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은 -----
--.

④ -----
----- 연령 등 -----
-----.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
--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

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 ③ (생 략)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음식물의 섭취나 직연행위

5. (생 략)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 녹화
· 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 · 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 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 ~ 3. (현행과 같음)

4. ----- 흡연행위

5. (현행과 같음)

6. --- 허가 없는 -----

7. 회의장 내 -----

8. -- 소란 등 -----

제81조(녹음 · 녹화 등) ① -----

회의장 안-----

--.

② -----

--- 사람은 -----

-----.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
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
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고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
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
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에서 징
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
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
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
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

③ -----
----- 회의장 내-----
----- 제
한 없이-----.

④ -----
하는 사람은 ----- 어지
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법 제98조-
----- (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

-----.

② ----- 소속 위원 중-

----- . -----

-----.

③ -----

-----. ----- 법 제95
조-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

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⑧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알게 된 -----

----- 3일 이내 -----
---. <후단 삭제>

② -----

----- 알게 된 -----
날로부터 5일 이내 -----
--. --- 폐회기간 중 -----
----- 3일 이내 -----
-----.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 지체 없이 -----

---.
② -----
-- 공개회의 -----.